

정 관

1970. 8. 27. 제정
1996. 6. 16. 개정
2004. 11. 17. 개정
2009. 1. 15. 개정
2012. 2. 9. 개정
2013. 4. 26.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(이하 "협회"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Korea Insurance Agency Association 약자로는 KIAA로 표기한다.

제2조(목적) 협회는 회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,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험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보험대리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성격) 협회는 보험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78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원조직으로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-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1. 보험대리점 제도, 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건의
 2. 보험대리점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

3.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대소비자 홍보
 4. 위험관리방안으로서 보험의 활용에 대한 캠페인 및 사회교육
 5. 회원권익 보호 및 회원 상호간의 연락 및 친목 도모
 6.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
 7. 보험대리점 창업 및 경영에 관한 지원 및 자문
 8.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종사자에 대한 정보 및 통계작성·관리 및 공시
 9. 회보, 월보 등의 발간과 홈페이지 구축 등 매체의 운영
 10. 기타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협회는 정부, 감독기관, 보험협회 및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사무소)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,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장 회 원

제6조(회원 및 자격) 협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
- ① 정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에서 보험대리점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.
- ② 특별회원의 자격은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보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.

제7조(가입) ①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가입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

제8조(권리의무) 협회 회원은 협회의 사업 활동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협회의 정관, 규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료의 제공)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가 요구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비) ① 회원은 정관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목적 및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하며,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.

② 회비는 일반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일반회비와 특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위해 별도로 각출하는 특별회비로 구분한다.

③ 회비는 보험대리점의 규모, 보험설계사의 수 등을 감안하여 총회에서 그 기준을 결정하며, 회비의 납부시기, 방법, 절차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단,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④ 회원이 정해진 기간 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협회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며, 동 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비의 납부 시까지 회원으로서 지위 및 자격이 정지된다.

제11조(제명 및 자격정지 등)

①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제명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정관 제6조의 회원자격 상실
2.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
3. 정관 제35조의 위원회가 회원의 제명 요구의 결의를 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 때

② 전 항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협회에 기 납입한 회비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.

③ 위 ①항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입회할 수 없다. 다만 3개월 내에 재입회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회원이 임의로 탈퇴한 경우도 동일하다.

④ 회원이 금융관계법령이나 협회의 정관, 규칙, 결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 또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원명부) ① 협회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협회사무실에 상시 비치한다.

② 회원은 명칭, 대표자 또는 주된 사무소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지부를 통하여 지체 없이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때 통지하는 내용은 보험대리점 등록서류 상 내용 또는 보험업법 제93조에 의해 변경 신고한 경우는 신고 내용 및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3조(임원구성) 협회의 임원은 상임임원, 비상임임원 및 비상임감사로 하며, 상임임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한다.

제14조(회장 및 부회장) ① 협회의 상임회장은 1인으로 하며 회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,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회장추천심사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 중 1,000명 이상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비상임이사 2인, 1,000명 미만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비상임이사 2인, 개인보험대리점 소속 비상임이사 2인으로 구성한다.

③ 협회의 부회장은 2인으로 하며,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상임여부를 결정하여 선출한다. 단 상임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1인
2. 개인보험대리점 소속 1인

제15조(이사 및 감사) ① 협회의 비상임이사는 21인 이내로 하며,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.

1. 소속설계사 수 기준으로 1,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서 7인 이내
2. 소속설계사 수 기준으로 1,000명 미만인 법인보험대리점에서 7인 이내
3. 개인보험대리점에서 7인 이내

- ② 협회의 비상임감사는 2인으로 하며,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총회에서 선임한다.
1.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1인
 2. 개인보험대리점 소속 1인
- ③ 위 ①항의 이사 외에 이사회에서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을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다.

제16조(임원의 임기) 협회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하며, 감사의 임기는 최종결산기에 관한 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다.

제17조(직무권한)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,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, 총회·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8조(자격상실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1. 보험업법 제87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
2. 임원이 속한 회원이 정관 제11조에 의해 제명 또는 자격 정지된 경우
3. 임원이 속한 회원이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

제19조(선임 및 보궐선임) ①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선임 및 보궐선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,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 한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보궐선임을 하며, 보궐선임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한다.

제20조(고문)

- ① 협회 내에는 자문위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고문을 둘 수 있다.
 - 1. 각 보험회사 및 유관단체의 임원
 - 2. 학계의 권위자
 - 3. 협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
- ②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장 총 회

제21조(총회)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.

② 총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단, 회장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17조 2항에 따라 정한 부회장이 임시회장이 된다.

- 1. 대의원의 자격은 회비납부를 한 회원으로 한다.
- 2. 대의원은 전체 300명으로 구성하며,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균등하게 각각 150명을 배분한다.
- 3. 법인보험대리점은 각 회원사가 1개의 대의원수를 가진다. 단 배분된 대의원수가 법인보험대리점 회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대의원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.
- 4. 개인보험대리점은 각 원수사별 협의회가 매 회계연도 말 원수사별 등록 개인보험대리점 수를 기준으로 배분된 대의원 수를 가진다. 단 원수사별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개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원수사별로 최대 5개의 대의원 수를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22조(소집)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 비상임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
 3.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 및 이사회에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할 때
- ③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3조(소집의 방법)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10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각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총회의 결의방법) ① 총회의 결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정관의 변경이나 개정 결의 등은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,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③ 임원의 해임, 회원의 제명 등의 결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,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④ 협회의 해산, 합병 또는 분할 등의 결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,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⑤ 위 ②,③,④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결의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25조(의결권) ① 대의원은 총회에서 각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.

② 대의원은 총회 전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③ 대의원이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킬 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하는 서면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6조(의결사항)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정관의 변경
- ② 협회의 해산, 합병 또는 분할
- ③ 임원의 선임 및 해임

- ④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
-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7조(총회 회의록) ①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총회 회의록에는 개최일시, 장소, 의사의 경과 및 그 결과 등을 기록하고 총회 의장, 감사 및 출석대의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③ 협회는 총회 회의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,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28조(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 단 회장의 유고 시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부회장이 임시의장이 된다.

제29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비상임이사가 재적 비상임이사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소집을 청구한 때
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10일 이전에 각 비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0조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① 총회에 부의할 사항
-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③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④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

⑤ 기타 협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31조(결의방법) ① 이사회는 재적 비상임이사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 비상임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,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, 상임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은 재적 비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비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32조(의결권)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각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.

제33조(대리출석) 비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4조(이사회 회의록)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는 정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장 위원회

제35조(위원회) ① 협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7장 업무분장

제36조(업무분장)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관할한다.

- ② 전 ①항에 따라 임·직원의 임명 및 업무분장은 회장이 행한다.
- ③ 협회의 직제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회계 및 자산

제37조(회계연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8조(자산)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.

- ① 회비
- ② 기부금품
- ③ 자산에서 생긴 과실
- ④ 사업에서 생긴 수입
- ⑤ 전 각 항 이외의 수입

제39조(특별회계)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의 출연으로 협회 회계와 별도로 특별 회계를 조성할 수 있다.

제40조(경비) 협회경비는 자산에서 충당한다.

제41조(자산의 관리) 협회의 자산은 이사회가 관리하며 그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42조(사업보고서 등의 작성)

- 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말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보고서
 - 2. 결산서
 - 3.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 - 4. 재산목록

5. 재무상태표

- ② 회장은 전항의 각 서류를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이전에 감사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.
- ③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를 필함과 동시에 그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감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3조(사업보고서 등의 승인) 회장은 정관 제43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장 해 산

제44조(해산)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으며,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.

제10장 보 칙

제45조(시행규칙 등) 협회는 본 정관의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.

부칙

1. 이 정관은 197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정관은 1999년 6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정관은 2004년 1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정관은 2009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정관은 2012년 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이 정관은 2013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